

방사선 장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(제9조제3항 관련)

1.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전

- 가. 신고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는 방사선 촬영구역 출입을 제한한다.
- 나.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고,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.
- 다.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드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을 신고한 후 진료에 사용한다.
- 라.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하였거나 임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방사선을 다루는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.

2.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

- 가. 납치마, 납장갑(방사선 차폐제 장갑), 고글 등 방사선 방호도구를 반드시 갖추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한다.
- 나. 촬영을 위해 동물을 바로잡는 경우 납장갑을 착용하여 피폭을 방지하고 손이 직접 촬영 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.
- 다.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시간을 되도록 짧게 하고,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의 거리를 멀리하도록 한다.

3.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후

- 가.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(동물의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을 포함한다)을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.
- 나. 방사선 방호도구는 정기적으로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보관방법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.
- 다.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3년마다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,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양도·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.